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 안 번 호 9138

제안연월일: 2025.3..

제 안 자: 외교통일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가. 다음 2건의 법률안을 외교통일위원회에 각각 상정한 후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건 명	의안번호	대표발의자	발의일	전체회의 상정일
국제개발협력 기본법	4968	권칠승의원	2024. 10. 28.	2025. 2. 26.
일부개정법률안	6598	민형배의원	2024. 12. 17.	2025. 2. 26.

나.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423회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25. 3. 6.)에서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조정하여 우리위원회 대안을 마련함.

다. 제423회국회(임시회) 제1차 외교통일위원회(2025. 3. 11.)에서 법 안심사소위원회가 심사 보고한 대로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각 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 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인권이 개발협력의 중요한 의제로 설정되고 있는 상황으로, 국제개

발협력의 기본정신에서 인권을 강조하려는 것임.

또한 국제개발협력의 기본법적 지위를 공고히 하고,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지지를 제고하고 관심을 독려하기 위하여 기념일 지정 및 포상 실시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마지막으로, 국제개발협력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위원회 업무 중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연관되어 있지 않은 기술적인 사무의일부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국제개발협력에 따라 인권향상의 대상이 되는 자의 범위를 '인 권 취약계층' 전체로 확대함(안 제3조제1항).

나. 국제개발협력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안 제6조제2항 신설).

다. 매년 11월 25일을 국제개발협력의 날로 정하고, 국가와 지방자 치단체로 하여금 국제개발협력의 날의 취지에 맞는 사업 실시를 노력 하도록 함(안 제18조의2 신설).

라. 국제개발협력위원회가 필요한 경우 국제개발협력 통계 관련 전자정보시스템 운영 업무의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함(안 제24조제2항 신설).

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제개발협력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자를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 신설).

법률 제 호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여성·아동·장애인·청소년"을 "여성·아동·장애인·청소년 등 인권 취약계층"으로 한다.

제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제개발협력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8조의2(국제개발협력의 날) ①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11월 25일을 국제개발협력의 날로 정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국제개발협력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 등 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2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위원회는 국제개발협력 관련 정보의 효율적 관리와 활용을 위하

여 필요한 경우 제21조에 따른 전자정보시스템 운영 업무의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2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포상)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제개발협력에 기여한 공로 가 현저한 기관·법인·단체 및 개인 등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 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기본정신 및 목표) ① 국제	제3조(기본정신 및 목표) ①
개발협력은 개발도상국의 빈곤	
감소, <u>여성・아동・장애인・청</u>	<u>여성ㆍ아동ㆍ장애인ㆍ청</u>
<u>소년</u> 의 인권향상, 성평등 실현,	소년 등 인권 취약계층
지속가능한 발전 및 인도주의	
를 실현하고 개발도상국과의	
경제협력관계를 증진하며 국제	
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추구하	
는 것을 기본정신으로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생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략)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u><신 설></u>	② 국제개발협력에 관하여 다
	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u><신 설></u>	제18조의2(국제개발협력의 날) ①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11월 25일을 국제개발협
	력의 날로 정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
	항에 따른 국제개발협력의 날

제24조(권한의 위임·위탁) (생략) <신 설>

<신 설>

의 취지에 맞는 행사 등 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4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위원회는 국제개발협력 관
런 정보의 효율적 관리와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21조에 따른 전자정보시스템 운영업무의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25조(포상) ①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는 국제개발협력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기관・법인・단 체 및 개인 등을 선정하여 포 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한다.